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4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23883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2081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1,067,570원의 부과처분 중 21,3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해 대조해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법인세 가산세의 10/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쟁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4

지방세법(별도의 가산세 한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한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이 아니라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5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에서 정한 안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쟁점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쟁점 지방세법 제86조 제2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거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산세 한도액에 관한 규정)를 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피고가 쟁점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한도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내지 준용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4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